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국 및 입국 신고 의무화 제도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수의사무관 임종률



오는 6월 3일부터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출·입국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축산관계자의 범위

- 가족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 가족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수의사·기축방역사·기축인공수정소 개설사 및 고용사
- 동물약품 제조·판매사 및 고용인
-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 가족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기축시장 및 도축장의 종사자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농장주의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소홀 또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축산농가 등 모든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공항 또는 항구에서 입국 시 방역교육과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 집에 도착하면 여행 중 입었던 옷은 바로 세척하고, 현지에서 사용한 신발 등은 다시 한번 세척·소독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경우 5일간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 요망

이러한 국경검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 2017년 6월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발하기 전에 출국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 주재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신고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입국할 때 출국처럼 입국 사실을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강화 조치는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출국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관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입국 신고 의무도 없어 출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책임을 분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후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했음에도 검역본부에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축산관계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출국 신고를 최초 1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해 계고장만 발급하나, 계고장을 받은 축산관계자가 2회 미신고 시에는 10만 원, 3회 미신고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출국 신고와 달리 입국 신고를 1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는 200만 원, 3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3월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여권 소지 축산관계자(약 20만)에게 매월 2회 출입국 신고 안내문서(SMS) 발송
- 가축질병 상당·예찰 시 축산농가(약 18만)에 출입국 신고제 의무화 안내
- 축산 전문지에 출입국 신고제 의무화 홍보
- 시사채, 협회, 단체 등을 통한 리플릿 배부 등

아울러 13개 축산관계자 직종 중 정보관리가 미흡한 7개 직종에 대해 지자체, 단체, 협회 등 주관기관별로 연 2회 자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행화 주관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관리·감독도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6개 직종의 축산관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축산관계자의 출국 신고는 출발하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고하거나,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출국 신고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검역본부에 해야 하고, 입국 신고는 입국장 세관 검사라인(마설리인)을 통과하기 전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검역본부 홈페이지 접속 ▶ 좌측 중앙의 「동물」 메뉴
▶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클릭

출국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에서는 법무부의 출국심사를 받은 축산관계자의 휴대전화로 출국 신고 안내 문자(SMS)를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 문자에 따라 '출국 신고 앱(App)'을 내려받아 신고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검역본부에서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 시 국경검역 조치를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축산농가는 관할 지자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신고율이 낮은 상황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새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역학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축산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소 제1항제2호	100	200	500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50	200	500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소 제2항제호	0	10	50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공함인 문의처

<p>인천공항 032)740-2660~1 무안공항 062)975-8030 제주공항 064)746-0761</p>	<p>김포공항 02)2664-2601(0601) 청주공항 043)213-0287 양양공항 033)635-9125</p>	<p>김해공항 051)971-1925 대구공항 053)982-5096</p>
<p>인천항 032)722-8222(8238) 군산항 063)460-9430 속초항·동해항 033)635-9125</p>	<p>부산항 051)600-0424 평택항 031)8053-7707~9 대산항 031)8053-7707~9</p>	<p>부산감안부두 051)611-6966 광양항 061)798-4921 제주항·강정항 064)728-5350</p>